

[별표 15]

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·기준 및 대상 항목(제44조제1항 관련)

검사 대상 항목	검 사 기 준	검 사 방 법
1. 소음도 검사 전 확인 가. 소음덮개 나. 배기관 및 소음기 다. 경음기	소음 저감시설이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것 -출고 당시에 부착된 소음덮개가 떼어지거나 훼손되어 있지 아니할 것 -배기관 및 소음기를 확인하여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전에서 유출되지 아니할 것 -경음기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지 아니할 것	-소음덮개 등이 떼어지거나 훼손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 -자동차를 들어올려 배기관 및 소음기의 이음상태를 확인하여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전에서 유출되는지를 확인 -경음기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3초 이상 작동시켜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를 귀로 확인
2. 소음도 측정	별표 13에 따른 운행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맞을 것 -배기소음측정	-자동차의 변속장치를 중립 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 출력 시의 75% 회전속도로 4초 동안 운전하여 최대소음도를 측정. 다만, 원동기 회전속도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기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 ○이 경우 중량자동차는 5dB, 중량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7dB을 측정치에서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하며, 승용자동차 중 원동기가 차체 중간

		또는 뒤쪽에 장착된 자동차는 8dB을 측정치에서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함
	- 경적소음측정	-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시키지 아니한 정차상태에서 자동차의 경음기를 5초 동안 작동시켜 최대소음도를 측정. 이 경우 2개 이상의 경음기가 장착된 자동차는 경음기를 동시에 작동시킨 상태에서 측정
	- 측정치의 산출	- 측정 항목별로 소음측정기 지시치(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기록장치의 기록치)의 최대치를 측정치로 하며, 암소음은 지시치의 평균치로 함 - 소음측정은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소음의 경우 2회 이상 실시하여 측정치의 차이가 2dB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하고 다시 측정함 - 암소음 측정은 각 측정 항목별로 측정 직전 또는 직후에 연속하여 10초 동안 실시하며, 순간적인 충격음 등은 암소음으로 취급하지 아니함 - 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치의 차이가 3dB 이상 10dB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측정치로부터 아래의 보정치를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하고, 차이가 3dB 미만

	일 때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함 단위: dB(A), dB(C) <table><tr><td>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 치 차이</td><td>3</td><td>4~5</td><td>6~9</td></tr><tr><td>보정치</td><td>3</td><td>2</td><td>1</td></tr></table> - 자동차소음의 2회 이상 측정 치(보정한 것을 포함한다) 중 가장 큰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함	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 치 차이	3	4~5	6~9	보정치	3	2	1
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 치 차이	3	4~5	6~9						
보정치	3	2	1						

참고

1. 위 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에 따라 운행차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를 준용한다.
2.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검사대행자동차의 소음기·소음덮개·경음기 등의 임의변경 여부와 자동차의 노후상태 등을 관능 및 서류로 확인하여 기준초과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소음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.